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안내

- 공급명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 공급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6층 993세대 중 일반분양 3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공 : 금호산업(주), 동서건설(주) ■ 시행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392세대, 특별공급 158세대 중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6세대
- 공급대상

주택명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아주차장등)	계약 면적	계	일반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일반 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59.7894A	59A	59.7894	20.7243	80.5137	38.9783	119.4920	178	17	17	35	5	104
59.9654B	59B	59.9654	20.6418	80.6072	39.0931	119.7003	82	8	8	16	2	48
73.4280	73	73.4280	24.9219	98.3499	47.8698	146.2197	86	8	8	17	2	51
84.9912A	84A	84.9912	27.4087	112.3999	55.4081	167.8080	36	3	3	7	1	22
84.9241B	84B	84.9241	28.4874	113.4115	55.3645	168.7760	4	-	-	-	-	4
84.9920C	84C	84.9220	30.3833	115.3053	55.3631	170.6684	6	-	-	1	-	5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구분		59A	59B	73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3	1	1	-	-	-	5
	장애인	5	3	3	2	-	-	13
	중소기업 근로자	5	3	3	1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1	-	-	-	6
합 계		17	8	8	3	-	-	36

※ 상기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급일정 안내

구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5.21(목) 예정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http://naunkhapt.com/)
건본주택 개관	2020.05.22(금) 예정	●당사 건본주택(아래 약도 참조)
특별공급 접수	2020.06.02(화) 예정	●인터넷 신청(www.applyhome.co.kr) (08:00~17:30)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 (방문접수시간 10:00~14:00)
당첨자 발표	2020.06.10(수)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0.06.22(월)~2020.06.24(수) 예정	●장소 : 당사 건본주택 ●시간 : 10:00~16:00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요건(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가입요건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군산시 및 전라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및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주택 건설지역(군산시.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4. 행정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한국감정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본주택 약도 및 연락처



■ 대표번호 : 063) 461-5556

■ 홈페이지 : <http://naunkhapt.com/>